

- 나. 관련법규 :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, 제6조.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2항, 제22조
 다. 예산조치 : 군청과 협의
 라.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현황 : 별첨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 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우리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의 방과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- 운영중인 지역아동 센터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센터에 대한 사업평가와 체계적인 운영·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의견과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현황 및 향후 예상되는 추가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의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깊이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문 :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시 당연직위원의 위촉인원이 주민생활과장과 고성군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2명인데, 관련된 사업과 지역 실정에 밝은 의원이 많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이 적음. 군의원이 위원으로 추가 위촉 할 수 있도록 수정 할 수 없는지?
- 답 : 현재 구성된 지역복지협의회 등 각종위원회에 대부분 군의원이 위원으로 1명이 참여하고 있음. 의원들이 각종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많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으로 군의원 1명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- 2010. 3. 3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